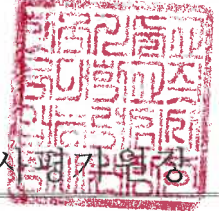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I. 심사평가 결과 안내

1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결과 안내

□ 대상기관 및 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에 따른 평가 대상 훈련기관* 및 과정심사 신청 훈련과정

*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증등급 부여

□ 인증등급 부여 및 훈련과정 선정 결과

- (인증등급) 평가 대상 4,557개소 중 3,992개소 인증, 565개소 인증유예
- (훈련과정) 과정심사 신청 38,619과정 중 32,031과정 선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 선정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대하여 '22.12월 중 '훈련과정 반납제' 시행 예정(추후 별도 공고)

□ 결과확인 경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모 회차별 개별 조회 가능
 - 「공모년도 2022」 선택 > 심사평가 대상별 공모 회차(9차, 10차, 11차, 12차) 선택 > 조회

<심사평가 결과 확인 방법>

회차	HRD-Net(심사평가 시스템) 접속경로		
9회차	「심사평가 일원화」	「일원화 최종결과」	「최종평가결과 조회」
10회차	「인증평가」	「평가 최종결과」	「최종평가결과 조회」
11회차	「과정심사」	「심사결과관리」	「심사결과 목록」
12회차	「인증평가」	「평가 최종결과」	「최종평가결과 조회」

※ 역량(훈련성과, 현장)평가 피드백보고서는 역량평가 결과 '인증유예' 부여 기관에 한하여 제공

2 유효기간 안내

□ 훈련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 2022년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증등급을 획득한 기관의 유효기간은 2023.1.1.부터 적용
- 우수훈련기관은 실적보유기관 유효기간 3년 외 2년 추가 부여

인증등급	유효기간
3년인증	2023.1.1. ~ 2025.12.31.
1년인증	2023.1.1. ~ 2023.12.31.
보유등급 유지	현재 보유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인증유예	2023.1.1.부터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 훈련과정 유효기간(훈련과정 개시 가능 기간)

- 우수훈련기관: 2023.1.1. ~ 우수훈련기관 지위 만료일까지(최대 3년) 유효기간 부여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우수훈련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2023.1.1. ~ 2023.12.31.까지 유효기간 부여
- 일반훈련기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유효기간 부여

II.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대상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심사평가 영역	이의신청 기관
기본평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역량평가	• 역량평가(훈련성과, 현장)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과정심사	• 훈련과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 신청 기간: 2022.10.21.(금) ~ 10.27.(목) 18:00

□ 신청 방법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 세부적인 이의신청 방법은 [별첨3]의 「이의신청 및 조건부 심사 HRD-Net 전산 활용 가이드」를 참고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 경로>

회차	HRD-Net(심사평가 시스템) 이의신청 경로		
9회차	「심사평가 일원화」	「일원화 이의신청」	「기관건전성평가 이의신청」
			「역량평가 이의신청」
			「과정심사 이의신청」
10회차	「인증평가」	「역량평가 결과」	「역량평가 결과목록」
11회차	「과정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목록」
12회차	「인증평가」	「역량평가 결과」	「역량평가 결과목록」

※ 과정심사의 직종 변경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첨5]를 작성하여 이메일 ccte@koreatech.ac.kr 로 제출

□ 이의신청 결과 공고: 2022.11.30.(수)

※ 이의신청 결과 공고일은 이의신청 심사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훈련과정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 및 절차

◇ '조건부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적합' 판정된 후 훈련 실시 가능

< 조건부 적합 항목별 상세 안내 >

구분	상세 설명
① 훈련시설	등록한 훈련시설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② 훈련장비	등록한 훈련장비의 추가·보완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
③ 훈련교재	등록한 훈련교재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④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록한 교수학습 또는 평가방법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⑤ 훈련 교·강사	(훈련교·강사) 적정 교·강사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총족 판정된 교·강사 중 보수교육 이수 필요자가 있는 경우
⑥ 혼합훈련 조건부	혼합훈련 중 원격보조훈련의 운영 전략, LMS, 콘텐츠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심사 대상: 위 표의 ①~⑥에 해당하는 항목이 '조건부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
- 신청 방법: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조건부 심사 신청
 - 조건부 항목 확인 및 세부적인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은 [별첨2]의 「이의신청 및 조건부 심사 HRD-Net 전산 활용 가이드」를 참고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조건부 심사 신청 경로>

- (심사평가 일원화, 9회차)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일원화 조건부신청」 > 「조건부신청 조회」 > 「공모년도 2022」 > 「일원화 심사평가 9회차」 > 「검색」 > 「조건부 신청」
- (과정심사, 11회차)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과정심사」 > 「조건부신청」 > 「조건부 신청목록」 > 「공모년도 2022」 > 「11회차」 > 「검색」 > 「조건부 신청」

- 신청 기간: **2022.10.27.(목) 10:00 ~ 12.31.(토) 18:00**
-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절차: 조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인정받은 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실시 전환 가능

※ 국기 및 일반 계좌제훈련: 관할 고용센터 / 사업주 위탁훈련: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IV.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이의신청 관련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
- 기본평가, 역량평가, 과정심사 등 심사평가 영역별로 중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
- 심사평가 영역 관련 이의신청에 한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 이의신청 제외 사항: 평가포기기관의 이의신청, 심사평가 문항별 점수 공개 요청, 심사평가 위원 정보 공개 요청, 훈련성과 점수 산정 관련 세부정보, 단순 건의사항 등

- 심사평가 영역별로 이의신청 사유 부적정 입력 및 미입력 시 해당 영역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이의신청 시 추가 서류의 제출은 불가하나, 재정건전성 평가*에 한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등급보고서, 개인신용보고서 등은 2022.3.1.~2022.10.27. (이의신청 마감일) 기간 내 발급분까지 인정, 재정건전성 평가 감점기관은 이의신청 시 [별첨2] 참고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의신청 불인정"으로 확정된 기관과 이의신청 미참여 기관은 최초 통보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확정
- 훈련기관은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 제기 가능

□ 인증등급 조정 및 과정인정 취소 관련

- 다음의 경우에는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통지 이후에도 인증등급 조정(인증유예) 및 과정인정 취소 가능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급 또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 훈련기관에 소유권이 없는 콘텐츠를 자체 콘텐츠로 인정받은 경우
 - 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나 출결 또는 취업률 등 훈련성과 등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 ②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④ '22.12.31.까지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우수훈련기관은 최종 결과 확정일까지 우수훈련기관 선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가능

※ 우수훈련기관 선정 취소 시 우대혜택 및 훈련과정 유효기간 등 조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확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해당 결과를 2022년도 심사평가 결과에 즉시 반영 가능

※ 행정쟁송의 가처분(집행정지 등)으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심사평가 반영이 보류된 경우, 행정쟁송 종결 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에 반영

2

기관평가 관련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의신청 인정'으로 재평가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기본평가(기관건전성평가) 등 이의신청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인증등급 및 과정심사 결과 통지
 - 현장평가 당시 확인된 증빙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는 불인정
 - 현장 재평가 일정 등은 대상 기관에 한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

3

과정심사 관련

- 훈련생 모집 또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훈련개시 가능 기간 및 개설 회차의 조정 가능
- 개설회차에 제한이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개시 가능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단위로 실시 횟수를 산정
-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 중 정부승인 훈련비 및 실제 수강료 변경이 필요한 훈련과정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조정 후에는 변경 불가

V. 문의처

문의 대상	문의처 및 문의 방법		
심사평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누리집	https://www.ksqa.or.kr/ → 소통마당 → Q&A → 훈련기관평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	https://hrdi.koreatech.ac.kr/ → 문의하기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	https://www.hrd.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스마트혼합훈련 컨설팅 및 원격훈련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	누리집	https://www.ksqa.or.kr/ → 소통마당 → Q&A → 스마트과정심사센터
공공콘텐츠 및 STEP 이용	온라인평생교육원	누리집	https://shub.step.or.kr/ → 고객센터 → 1:1문의

[별첨]

1.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과정심사 선정 목록 1부
2.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역량평가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조건부 심사 전산 활용 가이드 1부
4. 혼합훈련 원격보조훈련 조건부 심사 신청서 1부
5. 직종변경 이의신청서(양식) 1부